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1. 의결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세부 범위를 정하고, 안전성인증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에 다음과 같이 제14호를 신설한다.

14. 제8조의6에 따른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핵심장치등) 법 제30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장치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법 제2조제1호의6에 따른 구동축 전지
2.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륜자동차(수소연료전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별표 2 제2호저목부터 푸목까지를 각각 처목부터 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법 제30조의7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8호	100	200	3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자동차부품) 법 제2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 (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13. (생 략) <u><신 설></u>	제8조의2(자동차부품) -----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u>제8조의6에 따른 신기술 등</u> <u>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u> <u>부품(이하 “핵심장치등”이라</u> <u>한다)</u>
<u><신 설></u>	<u>제8조의6(핵심장치등) 법 제30조</u> <u>의7제1항에서 “신기술 등이 적</u> <u>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u> <u>심장치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u> <u>한다.</u> 1. 「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u> <u>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 <u>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u> <u>차에 사용되는 법 제2조제1호</u> <u>의6에 따른 구동축전지</u> 2. <u>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륜</u> <u>자동차(수소연료전지 이륜자</u> <u>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u> <u>구동축전지</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46